

#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계획



**소 방 청** (소 방 산 업 과)

#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계획

소방청 국정감사 및 현장 표본점검 결과에 따른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성능저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추진계획임.

### I. 개 요

### □ 현황 및 문제점

○ 비상방송설비 설치현황

\*민원정보시스템 자료

구분	총계	공동주택	복합건축물	공장	교육연구	근린생활	업무시설	기타
개소	69,398	13,552	13,826	11,419	6,604	7,329	3,777	12,891

- \* (설치대상) 연면적 3천5백㎡이상,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, 지하 3층이상
  - 관련규정
    - 소방시설업자는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계·시공·감리(공사업법 제11·12·16조)
    - 관계인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·유지·관리 의무(소방시설법 제9조)
    -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202)
- \* (제5조 제1호)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<u>단락 또는 단선</u>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
  - (문제점)비상방송설비 배선 단락(합선)
     □ 과도한 전류 발생 □ 증폭기(앰프)
    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 □ 증폭기 음성출력 차단(방송불가)

### □ 주요 추진경과

-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기본계획 ………………… '18. 11. 15
- 비상방송설비 관계전문가 회의(청5, 전문가15) ····· '18. 11. 30
- 개선된 비상방송설비 현장방문 확인(시험) ···· '18. 12.12 ~ 12.19
- 각 시·도 업무담당자 및 **관계자 회의** ······· ′18. 12. 21
- **근본적 문제해결**을 위한 종합개선대책 ······ ′18. 12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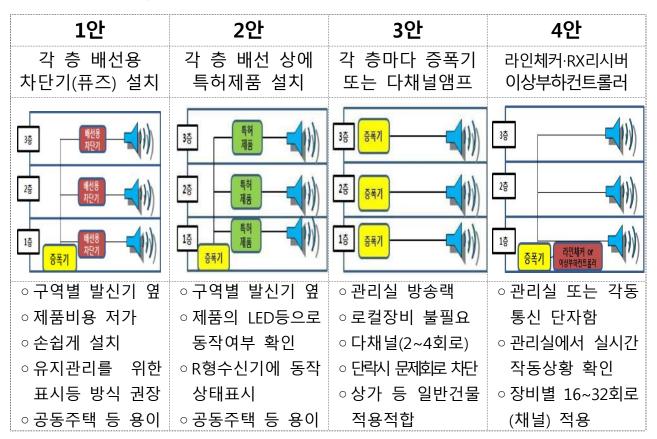
# Ⅱ. 주요 성능개선 방안

### □ 대상처 사전안내 및 계도

- (소방청) 협회를 통한 해당회원사의 문제점인식 및 개선방안에 의해 설계·시공·감리·점검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(안내)
- (소방관서) 민원(협의서류) 및 자체점검 접수 시 중점 확인·안내 \* 특히, 대상처의 자체점검 사전안내 시 중점 확인(예정)임을 고지
- (홍보) 관련업체·대상처 간담회 및 방문 시 홍보 및 **안내문 발송**

### □ 유형별 성능개선(안)

\*세부개선방안 붙임



- **상기 개선(안) 이외 다른 방법**으로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 제5조 제1호에 적합할 경우 **성능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음**.
- (권장사항) 같은 충·공간의 한구역이 단락되더라도 다른 구역의 비상방송에 지장이 없는지도 확인
  - ex) 아파트의 주차장·부대시설, 판매시설, 공장 등 수평적 장소

# Ⅲ. 기존건물 성능개선 추진

### □ 추진기간 및 방법

- 기 간 : **2019. 1. 1.** ~ **12. 31.(1**년간)
- 방 법 : 추진대상이 자체점검(종합정밀 또는 작동기능점검)대상에 포함 되므로 점검결과에 따른 비정상 작동대상 행정조치
  - 소방관서에서 정상작동 보고한 대상위주 표본점검\* 및 소방특별조사 \*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(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)에 따라 실시

### □ 현황작성 및 전수 정밀·검증

- (필요성) 민원정보시스템 추출자료로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별도 현황파악 후 **대상물별로 세부 추진방법 분류** (2019. 3월한)
- (현황작성) 소방관서「2019년 예방소방행정통계 자료조사」및 종합정밀점검 접수현황 등을 통한 **정확한 설치현황 작성**
- (홍보·안내) ① 소방시설관리협회를 통한 소방시설관리업체 안내 ② 추진대상(관계인)별 문제점인식 및 개선방안의 적용을 위한 소방관서 및 관련협회에서 안내문 등을 통한 홍보
- (전수검증) 전국 기존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약 69,398개소에 대한 구체적 위법여부를 정밀·검증실시(전수조사)

성능개선 계획	대상별 정밀점검	행정조치	표본점검 등	실적보고 (관리)
소 방 청	소방점검업체 (종합, 작동점검)	♡ 관할 소방서 ♡	소방관서 □>	서→본부→청
'18.12월	'19.1월 ~ 12월	점검(제출)후	반기별	매분기

### ○ (실적관리)

- (주요내용) 조사자, 특정소방대상물별 추진대상·방법, 대상별 추진·조치결과(조치명령, 과태료, 입건 등), 추진율 등
- (결과제출) 붙임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익월 5일한 소방청 제출

### □ 세부 점검(개선) 방법

#### ○ 하자보수 처리

- 하자보수 보증기간(비상방송 2년) 이내인 경우, 「소방시설 공사업법」 제15조(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) 규정을 적용, 절차이행(안내)
- (추진기간) **하자보수 보증기간(2년)이내** \*관계인→공사업자
- (특별관리) 하자요청을 받은 공사업자는 3일이내 하자를 보수 하거나 보수계획 등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도
- (행정조치)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거짓으로 알린 공사업자 \*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경고(시정명령)처분 조치
- 자체점검(종합정밀점검·작동기능점검)을 통한 점검
  - (점검자) 소방시설관리업체(소방시설관리사), 관계인·소방안전관리자
  - (점검방법) 성능개선된 비상방송설비 적용여부 확인하고,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 제5조 제1호 적법여부 확인
  - (확인방법) 소방시설등 종합정밀(작동기능)점검 보고서 확인
    \*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[별지 제2의7호서식]의 비고란 기재
  - (결과제출) 자체점검 후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보고서를 보고 \* 점검결과보고서를 거짓 보고한 자 (과태료 및 행정처분 조치)

### ○ 표본점검 및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한 개선사항 확인

- (확인방법)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(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) 대상 및 소방특별조사대상 등을 통한 확인
- (확인기간) 2019년 집중실시하고, 지속적으로 개선사항 확인
- (조 사 자) 소방관서장 지정자 \*필요시 전문가(소방기술사, 소방시설관리사 등) 참여
- (확인방법) 유형별 성능 개선방안에 의한 적용사항 확인 또는 필요시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 지장이 없는지 확인

### □ 행정조치 추진

- 비상방송설비 부적합 대상은 **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** 
  - (적용법령) 「소방시설법」제9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·관리 등) 및 제5조(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)
    - \*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결과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
  - (보완기간)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명령 통보일로부터 60일이내\*
    - \* 조치대상 및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소방서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완명령
-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- (관계인) 「소방시설법」 제48조의2 적용 \*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
- 소방시설관리업체(소방시설관리사)
  - (조치대상)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\* 200만원이하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경고(시정명령)처분

### Ⅳ. 신축건물 성능개선 방안

- (추진방향) 「소방시설 공사업법(명령)」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계·시공·감리토록 조치하고 위반자는 벌칙·행정처분 적용
- (설계) 소방시설 설계도서 등에 개선된 사항이 **설계, 설계내역서** 등에 반영되도록 지도·확인
- (시공·감리) 비상방송설비 설계도서에 따라 적법시공을 하고, 완공 성능시험 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소방관서 지도·감독 강화
- (성능인증) 향후 소비자가 신뢰하고, 비상방송설비 성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성능인증 또는 KFI인증제도 도입(검토)
- (협업) 정보통신 겸용의 경우 소방·통신간의 협업을 통한 시공

### Ⅴ. 행정(협조) 사항

### □ 소방관서

-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(보완)이 조기에 추진·완료될 수 있도록 자체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
  - (안내문발송) 관내 비상방송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『붙임1』 안내문 발송(하자보수대상은 즉시안내) '19. 1. 25일한
  - (실적제출) 『붙임4』 서식에 따라 매분기 익월 5일한

### □ 소방시설관리협회

- 종합정밀·작동기능 점검시 비상방송설비는 반드시 배선 단락(합선)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철저토록 교육 및 안내
  - (안내문발송) 등록된 모든 소방시설점검업체에 『붙임1-1』 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(배너설정) - '19. 1. 25일한

### □ 소방시설협회

-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설계·시공·감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교육 및 안내
  - (안내문발송) 등록된 모든 소방시설설계·시공·감리업체에 『붙임 1-2』 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(배너설정) '19. 1. 25일한

### □ 소방산업기술원

- 비상방송설비 성능 품질확보를 위한 성능인증 또는 KFI인정 검토(19.2.28일한)
- 붙임 1.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(보완) 추진 안내문 1부.
  - 2. 비상방송설비 단락시험 검사(확인)방법 1부.
  - 3. 관련규정 1부.
  - 4. 비상방송설비 개선 추진실적(서식) 1부. 끝.

#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(보완) 추진 안내문

### □ 관련규정 및 문제점

- (관련규정)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202) 제5조 1호
  -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
- (문제점)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이 화재로 인하여 단락(합선)될 경우, 비상방송 기능이 저하되거나 차단되는 문제발생
  - 주된 원인은 배선단락(합선) 시 발생되는 과전류로 인하여 엠프(증폭기)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된 보호차단기가 작동되기 때문임.
  - ※ 비상방송설비 대부분은 일반방송설비와 겸용으로 소방관련법령에 의한 검인증 대상 제품이 아님.

### □ 점검 및 성능개선

- (기간) 2019. 1. 1 ~ 12. 31.(1년간)
- (방법) 종합정밀·작동기능 점검한 결과 적합여부를 관할소방서 제출
  - 부적합 대상은 관할소방서 행정조치에 따라 성능개선(보완)

〈 성능개선(보완) 방안〉

- 충별(구역) 배선마다 퓨즈설치 등 『붙임』 6개방법 중 선택하여 성능개선(보완) ※ 붙임 외 방법으로 NFSC202 제5조 1호에 적합할 경우 성능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음.
- 하자보수 보증기간(2년) 이내인 경우, 하자보수 절차로 이행
  - ※ 향후, 소방관서 표본점검 등을 통한 개선사항 및 자체점검 적법여부 확인예정

### □ 협조사항

-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시 초기 인명대피 안내방송을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이므로 조기에 점검·보완될 수 있도록 협조
- 기타 점검 및 성능개선(보완) 관련, 궁금한 사항은 ○○○소방서 (전화 ○○○-○○○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(보완) 추진 안내문

### □ 관련규정 및 문제점

- (관련규정)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202) 제5조 1호
  -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
- (문제점)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이 화재로 인하여 단락(합선)될 경우, 비상방송 기능이 저하되거나 차단되는 문제발생
  - 주된 원인은 배선단락(합선) 시 발생되는 과전류로 인하여 엠프(증폭기)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된 보호차단기가 작동되기 때문임.
  - ※ 비상방송설비 대부분은 일반방송설비와 겸용으로 소방관련법령에 의한 검인증 대상 제품이 아님.

### □ 점검 및 성능개선

- (기간) 2019. 1. 1 ~ 12. 31.(1년간)
- (방법) 종합정밀·작동기능 점검한 결과 적합여부를 관할소방서 제출
  - 부적합 대상은 관할소방서 행정조치에 따라 성능개선(보완)

〈 성능개선(보완) 방안〉

- 층별(구역) 배선마다 퓨즈설치 등 『붙임』 6개방법 중 선택하여 성능개선(보완) ※ 붙임 외 방법으로 NFSC202 제5조 1호에 적합할 경우 성능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음.
- 하자보수 보증기간(2년) 이내인 경우, 하자보수 절차로 이행
  - ※ 향후, 소방관서 표본점검 등을 통한 개선사항 및 자체점검 적법여부 확인예정

### □ 협조사항

-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시 초기 인명대피 안내방송을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이므로 조기에 점검·보완될 수 있도록 협조
-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정밀·작동기능 점검시 비상방송설비는 반드시 배선 단락(합선)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철저

#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(보완) 추진 안내문

### □ 관련규정 및 문제점

- (관련규정)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202) 제5조 1호
  -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
- (문제점)비상방송설비 배선 단락(합선) □ 과도한 전류 발생 □ 증폭기(앰프)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 □ **증폭기 음성출력 차단(방송불**가)

### □ 성능개선 방안

- (추진방향) 「소방시설 공사업법(명령)」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계·시공·감리토록 조치하고 위반자는 벌칙·행정처분 적용
- (기존대상) ① 하자보수 보증기간(2년) 이내인 경우, 하자보수 절차로 이행 ② 2019년도 자체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조치
- 회선마다 퓨즈설치 등『붙임』6개방법 중 선택하여 개선
  - \* 붙임 외 방법으로 NFSC 202 제5조 1호에 적합할 경우 성능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음.
- (설계) 소방시설 설계도서 등에 개선된 사항이 **설계, 설계내역서 등에 반영(**명시)
- (시공·감리) 비상방송설비 설계도서에 따라 적법시공을 하고, 완공 성능시험 등이 이루어 질 것 → 향후, 소방관서 지도·감독 강화(예정)
- (협업) 정보통신 겸용의 경우 소방·통신간의 협업을 통한 시공

### □ 협조사항

-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시 초기 인명대피 안내방송을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이므로 조기에 점검·보완될 수 있도록 협조
- 건축물 소방시설공사 중 비상방송설비는 반드시 배선 단락(합선)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·시공·감리 철저

### 참고자료

### 유형별 성능개선 방안

□ (개선방안1) 각 층 배선상에 배선용차단기(퓨즈)설치



배선용차단기(퓨즈+작동확인LED)설치



배선용차단기(퓨즈)설치

- (설치) 각층 중계기함, 스피커 단자대, 출력전압에 맞는 퓨즈설치
- (장점) 시공비가 저렴하고, 단순기술로도 개선가능, 인터넷 구입가능
- (단점) 퓨즈이상 발생 시 각층 중계기함 전수확인 필요, 단선확인 LED가 없을 경우 퓨즈단선여부 확인 곤란, 유지관리가 어려움

### □ (개선방안2) 각 충마다 증폭기(엠프) 또는 다채널엠프 적용

- (설치) 방재실(관리실)에 설치
- (장점) 별도의 배선용차단기 또는 특허 제품 설치 불필요, 상가·업무시설 등 적합
- (단점) 증폭기(엠프) 추가설치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
- \* (다채널)엠프를 각 충별로 설치하였다면 단락증상 없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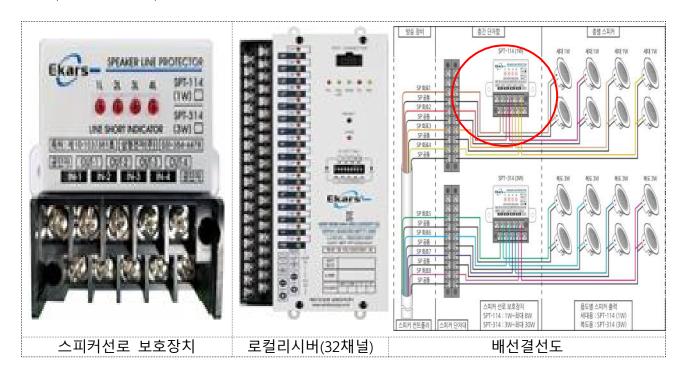


### □ (개선방안3) 특허제품(단락신호 검출장치) 설치





- (설치위치) 각 층 소방중계기함에 설치
- (장점) 동작(정상·방송·단선·단락) 표시등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
- □ (개선방안4) 특허제품(폴리스위치를 이용한 시스템) 설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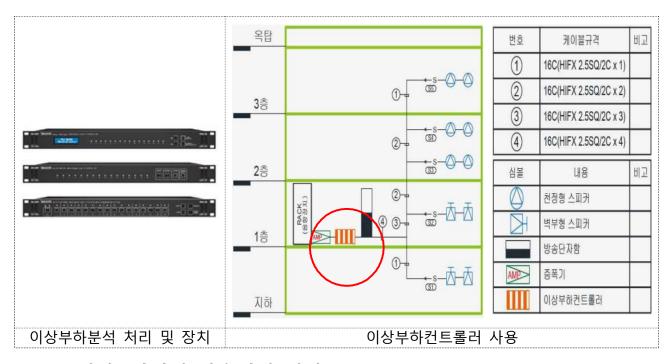
- (설치) 각 동 소방중계기함 또는 통신단자함에 설치
- (장점) 4채널~32채널 단락·단선시 감지 및 조치할 수 있음. 동작(정상·방송·단선·단락) 표시등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

### □ (개선방안5) 특허제품(RX방식 리시버) 설치



- (설치위치) 관리실 또는 각 동 통신단자함에 설치
- (장점) 관리실 운영 PC프로그램상 표시, 메인장비의 LED창 표기 주차장·옥외스피커용 가능, 전관방송용 장애감지 및 차단제어

### □ (개선방안6) 특허제품(이상부하컨트롤러 3종) 설치



- (설치) 관리실 방송랙에 설치
- (장점) 증폭기(엠프)를 개별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

### 붙임2

### 비상방송설비 단락시험 검사(확인)방법

### □ (검사방법1) 방재실 엠프설치 수량 확인

- (다채널)엠프를 **각 충별로 사용**하고 있다면 **단락증상 없음** \*예) B1층 한대 / 1층 한대 / 2층 한 대 / 3층 한 대 / .....
- (충 표기 있을 경우) 엠프 전면에 대부분 층 표기를 하고 있으므로 확인
- (충 표기 없을 경우)
  - ① 음악 또는 라디오를 켠 상태에서 스피커셀렉터\* 기능을 찾음(대부분 구역명 표기됨) ② 전체를 개방하면 전체적으로 점등되면서 건물전체 방송이 나감
  - ③ 엠프를 보면 엠프전면 출력 LED레벨이 상하로 움직이는 것이 보임
  - ④ 스피커셀렉터 구역버튼을 하나씩 닫으면 엠프의 전면 출력 LED레벨

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보이면 그 구역의 엠프로 판단 ⑤ 같은 방법으로 전체 셀렉터를 한 구역씩 검사하여 한 엠프에 2개층이상 또는 1개층인데

\*스피커 셀렉터

구역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면 단락시험 검사대상임.

### □ (검사방법2) 확성기 단락시험 방법

- (조치) 수신기에서 자동복구 기능 설정
- (검사자-3인) 엠프확인자 / 확성기 단락자 / 상층 방송확인자
- (시험방법) ① 천정 또는 벽면에 부착된 스피커를 탈착 후 방재실 연락 ② 방재실에서 검사층 확인 후 해당 층의 엠프앞에 대기 ③ 검사층에서 발신기 누름 ④ 검사 층에 화재방송이 나오면 단락자는 확성기를 약 5초 정도 단락 ⑤ 단락해제 ⑥ 단락과 해제 몇 회 반복 ⑦ 방재실 엠프확인 자는 출력레벨확인하고, 상층부 방송확인자는 비상방송이 끊김없이 나오는지 확인함.
- \* (유의사항)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구분 없이 시험실시, 대표볼륨은 12시 방향 (중간정도)설정하여 단락시험 검사

# 관련규정(소방시설 공사업법)

# □ 설계, 시공, 감리

#### 제11조(설계)

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(이하 "설계업자"라 한다)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**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**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.

#### 제12조(시공)

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(이하 "공사업자"라 한다)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**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**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.

#### 제16조(감리)

-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(이하 "감리업자"라 한다)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- 1.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
  - 2.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(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검토
  - 3.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
  - 4. 소방용기계·기구 등의 위치·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
  - 5.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**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·감독**
  - 6.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
  - 7.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
  - 8.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
  - 9. 실내장식물의 불연화(不燃化)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

### □ 하자보수

#### 제15조(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)

-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 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.
- ② 공사업자는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.
- ③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,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- ④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.
  - 1.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- 2.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
  - 3.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제30조 제2항에 따른 지방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, 그심의 결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.
- ⑥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명령을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담보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를 보증한 기관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인은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내용이나 보증기관의 하자보수 내용을 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.

### □ 행정처분 및 벌칙

#### 제9조(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)

- ① 시·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·제3호 또는 제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~ 8. (생략)
  - 9.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**화재안전기준(이하 "화재안전기준"이라 한다) 등에 적 합하게 설계·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**,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**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**
- 10. 제11조,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계, 시공 또는 감리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

#### 제36조(벌칙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**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** 벌금에 처한다.

- 1.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
- 2.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
- 3.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

#### ※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- 제9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·관리 등)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 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·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 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제48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제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